

2023년도 시행

**지방행정재무과금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세 정 책 관

목 차

I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령

- 1. 납부증명서 제출 기관 확대(법 § 7의6, 영 § 5의8) 7
- 2. 제3자의 납부근거 마련(법 § 7의8) 10
- 3.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마련(법 § 15의2) 12

II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 1.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정비(규칙 § 2의2) 17
- 2. 별지 서식 형식 정비(별지 § 1의12, § 6, § 14, § 15 서식) 19
- 3. 압류 대상별 통지 서식 정비(별지 § 2, § 9의2 서식) 24
- 4.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 7 서식) 28

I.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령 개정내용

1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법 § 7의6, 영 § 5의8)

1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
 -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더라도 납부증명서 제출 없이 대금 수령 가능
- ⇒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에도 납부증명서 제출 의무화
- ※ 공공기관 :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적용요령

- 2024. 1. 1.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현행 제7조(대금지급 정지)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 조문

법률

개정 전	개정 후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1)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6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대통령령 제30545호 지방세외수입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신 설> (생략)	대통령령 제30545호 지방세외수입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7조의6 본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 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 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 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2 제3자의 납부근거 마련(법 § 7의8)

1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 신 설 >	☐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납부근거 마련

☐ 개정내용

- 납부의무자 외 제3자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납부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 편의성을 향상하고 징수율을 제고

*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가산금+체납처분비

☐ 적용요령

-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부과된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해서도 적용

2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납부의</u> <u>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u> <u>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u> <u>· 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u> <u>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u> <u>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u> <u>한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u> <u>· 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u> <u>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u> <u>을 청구할 수 없다.</u> 부 칙 <u>제2조(제3자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u> <u>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u> <u>행 전에 부과된 지방행정제재 ·</u> <u>부과징수금에 대해서도 적용한</u> <u>다.</u>

1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 < 신 설 > ☐ 체납처분을 속행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27조를 준용	☐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 상속재산,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 체납처분 속행 규정을 준용

□ 개정내용

-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 등은 「상법」 제235조 등에 따라 소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
- ⇒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근거를 신설하여 공적 납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

□ 적용요령

- 종전 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u>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채납처분의 집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u>

Ⅱ.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규정	□ 범칙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별도 구분

□ 개정내용

- ‘범칙금’은 금전적 제재수단인 점에서는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형사벌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제재금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등과 차이점이 있으므로,
 - 지방세외수입의 종류에 범칙금을 추가하여 별도 구분

□ 적용요령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48호, 2022.7.22. 시행)」의 별표8(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은 ‘범칙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하위 별도항으로 구분하고,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도록 함

2 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 다. 1. (생략)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 ~ 6) (생략) <u><신설></u> 나. (생략) ② (생략)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1) ~ 6) (현행과 같음) 7) <u>범칙금</u> 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별지 서식 형식 정비(별지 제1호의12, 제6호, 제14호, 제15호 서식)

1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서식 작성과 함께 이와 관련한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	☐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도록 그 서식 자체를 시행문 형식으로 간소화

☐ 개정내용

-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도록 별지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 형식으로 정비

☐ 적용요령

- 시행규칙 [공포일\('23. 3. 00.\)](#)부터 적용

2 서식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총당 통지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2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귀하(귀 법인)가 체납 중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충당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환급내역	부과과목	부과연월	부과번호	부과대상	① 환급금	② 환급가산금	(①+②=가) 환급금 합계	환급담당 부서
총당내역	부과과목	부과연월	부과번호	부과대상	체납액		(나) 총당액	총당담당 부서
(가)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환급금 합계				(나) 총당액			(가-나) 총당 후 환급액	

끝.

발신명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 해제 통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한 압류가 다음과 같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해제일		년	월	일		
해제사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단위: 원)			
			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매각결정 통지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수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매수대금				
대금납부기한		년	월	일

끝.

발신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매수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합니다. 아래 납부 촉구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공매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매각재산의 표시				
납부할 금액				
당초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 촉구기한		년	월	일

끝.

발신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3

압류 대상별 통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제9호의2서식)

1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채권 압류 시 ‘채납자’와 ‘채납자에게 채무를 진 제3자’에게 해당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서식이 별도로 없음	☐ 채권 압류 시 ‘채납자’와 ‘채납자에게 채무를 진 제3자’에게 해당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 채납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서식 신설

□ 개정내용

-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도록 별지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 형식으로 정비

□ 적용요령

- 시행규칙 공포일('23. 3. 14.)부터 적용

2 서식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재산 압류 통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조서 작성일	년 월 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단위: 원)	
			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채권 압류 통지(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년 월 일까지 우리 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채권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조서 작성일	년 월 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단위: 원)	
			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채권 압류 통지(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자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채무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조서 작성일	년 월 일
압류의 사유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단위: 원)	
			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4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7호서식)

1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 신 설 >	☐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담보 물건 작성란 추가

☐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 유예 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담보물건의 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작성란 신설

☐ 적용요령

- 시행규칙 공포일('23. 3. 14.)부터 적용

2 서식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00.00.>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납부할 금액(체납액)의 내용	부과 연도	기분	부과 번호	과목	납부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비고
						계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할납부를 받으려는 금액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비고
	1회	원		
	2회	원		
	3회	원		

담보 물건	
-------	--

위와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 란은 부과기관에서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둡니다.
6.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9. 부과연도, 기분, 부과번호, 과목,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비고: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당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10.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과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및 기간을 적습니다.
11.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2. 담보 물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